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대치1빗물펌프장 신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2015. 10.

강남구청 치수과

1. 용역명 : 대치1빗물펌프장 신설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2. 목 적

- 대치1빗물펌프장 신설 공사에 대하여 효율적인 공사관리, 정밀시공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설계도서, 지방서, 관계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예산의 적정 집행과 원활한 공사추진으로 침수피해 예방과 주민불편을 해소

3. 용역과업 대상

가. 용역명 : 대치1빗물펌프장 신설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나. 용역사업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치수과)

다. 사업 및 용역내용

- 공사위치 : 서울시 강남구 대치역사거리~학여울역~양재천(영동6교)

○ 공사개요

- 하수암거 신설 □3.0×2.5m, L=891m
- 수문일체형 배수시설 1개소
- 기타 부대시설 등

○ 용역내용 :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라. 용역비 : 1,216,000,000원(1차: 90,000,000원)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1차 : 착수일로부터 72일)

바. 과업의 범위 : 공사전반(토목, 건축, 기계, 전기 포함)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종합)

※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규정 등

4. 주된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5. 용역업체 선정

(1) 선정절차

- ① 입찰공고 → ② 신청안내서 및 과업내용서 교부 → ③ 신청서 접수 → ④ 부실기술자 등록여부 조회(기술심사담당관) → ⑤ 수행실적평가(수행실적, 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자기술자 면접) → ⑥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 ⑦ 평가내용 공개(나라장터,홈페이지) → ⑧ 이의신청 → ⑨ 입찰등록 및 입찰 → ⑩ 개찰 → ⑪ 낙찰자선정 → ⑫ 계약체결

(2) 입찰참가자격

-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분야 등록을 필한 업체.
- ②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둔 건설기술용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2015.4.10)」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공동도급은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 ③ 공동도급 대표사는 용역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함
- ④ 구성원체 분담 비율

분 야	토목,건축,기계	전 기	계
분담율(%)	95.1%	4.9%	100%

(3) 기술용역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결정 :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의한 적격심사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 낙찰자 결정기준(추정가격 30억 미만 10억 이상 기술용역 기준 적용)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15.4.10)
 - 수행능력평가점수(65) + 지역업체 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점수(30)
(지역업체 참여비율 : 30%이상 3점, 30%미만~20%이상 1점, 20%미만 0점)

(4) 입찰참가자격자 선정

- 입찰참가자격자 선정 방법 : 사업수행능력에 의한 평가(PQ)
 - “입찰참가자격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 강남구(치수과)와 타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중복 배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타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타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타 발주청이 강남구(치수과)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한 경우에 한함]에는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배점기준 : 총 100점

(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총 10명)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고급기술자 1명(토목)
(상하수도기술사)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중급기술자 4명
(건축,전기,기계,조경)
중급기술자 이상 2명(토목)

○ 기술지원 기술자(3명) : 고급기술자이상(상하수도분야, 토질및지질분야, 기계분야)

(다) 참여기술자 등은 해당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여부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심사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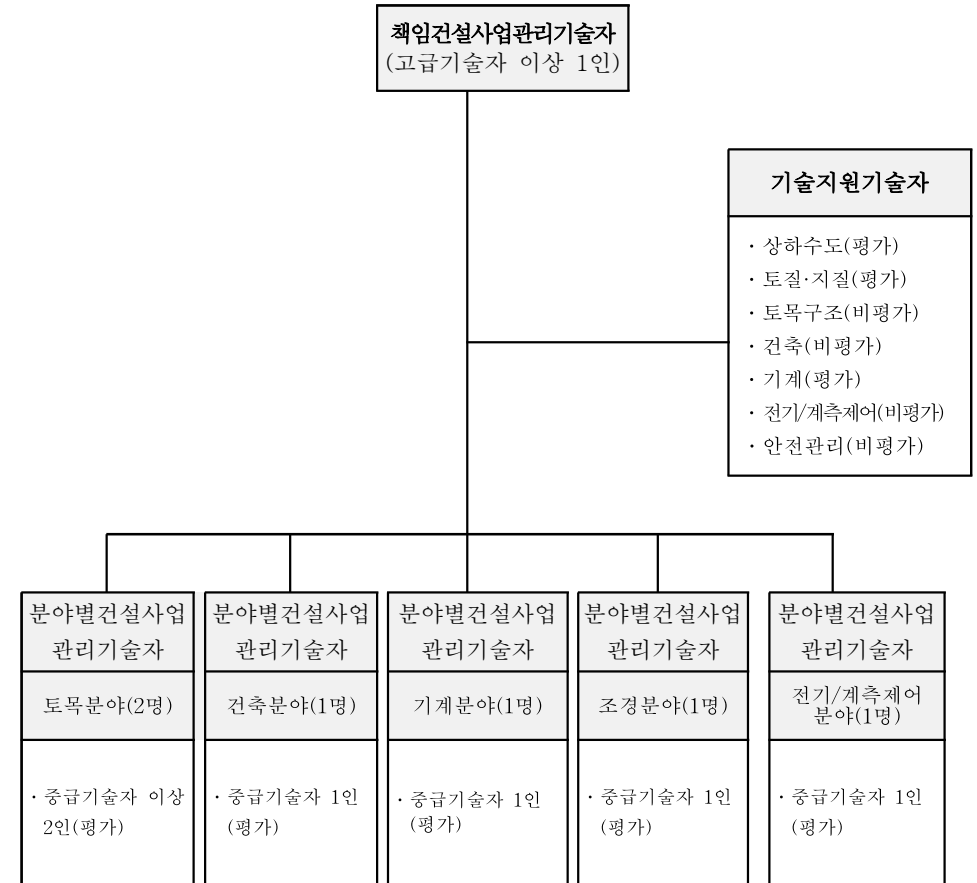
- 자 격 : 사업수행자격, 입찰참가제한 여부, 재정상태, 기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관이 붙인 조건의 충족 여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배점

<사업수행능력 평가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참여기술자 (60)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 (20)	등 급	부적격시 실격	절대평가
		경 력	10	
		실 적	9	
		교육훈련	1	
	분야별건설사업관리 기술자 (23)	자 격	부적격시 실격	절대평가
		경 력	13	
		실 적	9	
		교육훈련	1	
	기술지원기술자 (10)	등 급	3	절대평가
		경 력	6	
		교육훈련	1	
	면접발표(7)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5	상대평가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	2	
유사용역 수행실적(10)	회사실적		10	절대평가
신 용 도 (15)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지 정 기 간	7	절대평가
	부실벌점	부 과 기 간	5	
	재정상태 건설도	신용평가등급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 발 실 적		3	절대평가
	투 자 실 적		7	
교체빈도 (5)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절대평가
	참 여 기 술 자		2	
합 계			100	
가 점	공사비 절감기여 감리원		0.2	절대평가
감 점	부패행위 관련자		10	절대평가

1. 배점은 사업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의 면접을 평가
2. 부실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자가 5년내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시 면접발표등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시 발생사항(안전사고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조직표



※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인원수를 명기하여 제시하고, 미 평가자는 자격등급만 명시
- 단, 안전관리분야는 안전관리분야 기사(건설안전, 산업안전) 이상 자격 소지자에 한함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평가서 작성기준

I 수행실적 평가기준

1. 평가기준

- 1)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2015.4.10)
- 2)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서울특별시, 2015.8.1)

2. 일반사항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동 작성 요령에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첨부된 증빙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수행능력 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2)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해당 용역 발주부서의 확인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다.
- 3)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PQ)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참여사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한하여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4)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용역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 5) 참여기술자의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에 의하여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자에 의한 기술자를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 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 나. 주택법 제24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 다.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감리
 -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부서의 공사감독, 사업관리
- 7) 사업수행실적평가결과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 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하고 100점 이하인 경우는 원점수를 적용한다
-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 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재정상태건설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PQ평가 대상자에 대한 공동도급자의 참여감리원은 지분율 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정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9)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10)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상 실격처리 될 경우 더 이상의 평가를 하지 않고 해당 건설사업관리사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 11)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평가대상 기술자가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간 계산 및 평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기준
-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 선정업체가 작성한 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첨부자료 해당부분에 형광펜 등으로 표기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 예정일(기술자 중첩도 평가) : 공고일 기준 2개월

분야별 건설사업기술자	배치 예정일	비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2015. 11. 00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	2015. 11. 00	

1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면접발표 등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아래 위반사항 업체에 대하여는 감점하며, 입찰공고시 공고

< 비리감점 규정 >

구 분	감 점 사 유	감점	감점기간
비리감점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3	당해심의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 설명 금지 위배	2	적발일부터 1년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당시 소속직원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적발일부터 2년

14) 상대평가지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15)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자

- 시공단계 참여기술자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발주부서는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자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16)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 한다.

-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 나. 기술지원기술자가 다른 건설사업관리요역에 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 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자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총 7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자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자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총3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다른 용역의 발주부서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부서는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17)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자가 5년 내에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용역 사업수행 능력평가 시 면접발표 등 "주관적 평가 항목" 평가시 부실(안전사고 발생 등) 발생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부실 발생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없이 적용하되, 공동등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고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자에 대한 관련자료(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는 도시기본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

※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자는 용역발주시 사업 수행능력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대한 책임 성과 경각심 고취 및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

3. 수행능력평가 배점기준

가. 참여기술자(60점)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자 (60)	(1)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35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함 < 빗물펌프장이 포함된 건설공사 > <table border="1"> <thead> <tr> <th>해당공사규모</th> <th colspan="5">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 (단위 : 년)</th> </tr> </thead> <tbody> <tr> <td>300억원 미만</td> <td>5이상</td> <td>5미만 3이상</td> <td>3미만 2이상</td> <td>2미만 1이상</td> <td>1미만</td> </tr> <tr> <td>점수</td> <td>10</td> <td>9</td> <td>8</td> <td>7</td> <td>6</td> </tr> </tbody> </table>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 (단위 : 년)					300억원 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수	10	9	8	7	6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 (단위 : 년)																		
300억원 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수	10	9	8	7	6																
	(가)해당 분야 경력		<p>※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p> <p>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6점)</p> <table border="1"> <thead> <tr> <th>등 급</th> <th colspan="5">점 수 (단위 : 년)</th> </tr> </thead> <tbody> <tr> <td>고급기술자</td> <td>12이상</td> <td>12미만 10이상</td> <td>10미만 8이상</td> <td>8미만 6이상</td> <td>6미만</td> </tr> <tr> <td>점수</td> <td>6</td> <td>5.7</td> <td>5.4</td> <td>5.1</td> <td>4.8</td> </tr> </tbody> </table>	등 급	점 수 (단위 : 년)					고급기술자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6	5.7	5.4	5.1	4.8
등 급	점 수 (단위 : 년)																				
고급기술자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6	5.7	5.4	5.1	4.8																
	(나)직무 분야 실적	9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자	(나) 직무 분야 실적	1	2)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3점)																			
			<table border="1"> <thead> <tr> <th>등 급</th> <th colspan="5">점 수(단위: 년)</th> </tr> </thead> <tbody> <tr> <td>고급기술자</td> <td>5이상</td> <td>5미만 4이상</td> <td>4미만 3이상</td> <td>3미만 2이상</td> <td>2미만</td> </tr> <tr> <td>점수</td> <td>3</td> <td>2.8</td> <td>2.6</td> <td>2.4</td> <td>2.2</td> </tr> </tbody> </table>					등 급	점 수(단위: 년)					고급기술자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수	3	2.8
등 급	점 수(단위: 년)																					
고급기술자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수	3	2.8	2.6	2.4	2.2																	
(다) 교육 훈련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p>1) 교육훈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2주 이상</th> <th>1주 이상 2주 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0.5</td> <td>0.3</td> </tr> </tbody> </table> <p>2) 기술자격</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술사·건축사</th> <th>기사</th> <th>산업기사</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0.5</td> <td>0.3</td> <td>0.1</td> </tr> </tbody> </table>					구분	2주 이상	1주 이상 2주 미만	점수	0.5	0.3	구분	기술사·건축사	기사	산업기사	점수	0.5	0.3	0.1	
구분	2주 이상	1주 이상 2주 미만																				
점수	0.5	0.3																				
구분	기술사·건축사	기사	산업기사																			
점수	0.5	0.3	0.1																			
(1)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가) 해당 분야 경력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기술자의 인원수 및 기술자 등급을 결정하여 발주부서의 장이 입찰공고시 제시 																			
해당공사 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 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 (단위 : 월)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26이상	26미만 21이상	21미만 16이상	16미만 10이상	10미만																	
점 수	13.0	11.7	10.4	9.1	7.8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자	(나) 직무 분야 실적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5점) 																															
			<table border="1"> <thead> <tr> <th>등 급</th> <th colspan="5">점 수(단위: 년)</th> </tr> </thead> <tbody> <tr> <td>고급기술자</td> <td>7이상</td> <td>7미만 5이상</td> <td>5미만 4이상</td> <td>4미만 3이상</td> <td>3미만</td> </tr> <tr> <td>중급기술자</td> <td>6이상</td> <td>6미만 4이상</td> <td>4미만 3이상</td> <td>3미만 2이상</td> <td>2미만</td> </tr> <tr> <td>점 수</td> <td>5.0</td> <td>4.5</td> <td>4.0</td> <td>3.5</td> <td>3</td> </tr> </tbody> </table>					등 급	점 수(단위: 년)					고급기술자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중급기술자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5.0	4.5	4.0	3.5	3			
등 급	점 수(단위: 년)																																	
고급기술자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중급기술자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5.0	4.5	4.0	3.5	3																													
(다) 교육 훈련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4점) 																															
			<table border="1"> <thead> <tr> <th>등 급</th> <th colspan="5">점 수(단위: 년)</th> </tr> </thead> <tbody> <tr> <td>고급기술자</td> <td>3이상</td> <td>3미만 2이상</td> <td>2미만 1이상</td> <td colspan="2">1미만</td> </tr> <tr> <td></td> <td>4.0</td> <td>3.6</td> <td>3.2</td> <td colspan="2">2.8</td> </tr> <tr> <td>중급기술자</td> <td colspan="2">2이상</td> <td colspan="3">2미만</td> </tr> <tr> <td></td> <td colspan="2">4.0</td> <td colspan="3">3.6</td> </tr> </tbody> </table>					등 급	점 수(단위: 년)					고급기술자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4.0	3.6	3.2	2.8		중급기술자	2이상		2미만				4.0	
등 급	점 수(단위: 년)																																	
고급기술자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4.0	3.6	3.2	2.8																														
중급기술자	2이상		2미만																															
	4.0		3.6																															
(3) 기술 지원 기술자 (가) 등급	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2주 이상</th> <th>1주 이상 2주 미만</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1</td> <td>0.5</td> </tr> </tbody> </table> <p>※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p>					구분	2주 이상	1주 이상 2주 미만	점수	1	0.5																					
구분	2주 이상	1주 이상 2주 미만																																
점수	1	0.5																																
(가) 등급	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자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자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해당 공사규모</th> <th colspan="5">등 급(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총공사비 300억원미만</td> <td colspan="2">고급기술자 이상</td> <td colspan="3">중급기술자</td> </tr> <tr> <td colspan="2">3</td> <td colspan="3">2</td> </tr> </tbody> </table>					해당 공사규모	등 급(점수)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기술자 이상		중급기술자			3		2												
해당 공사규모	등 급(점수)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기술자 이상		중급기술자																															
	3		2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 (단위 : 년)																		
가. 참여 기술자	(나) 해당 분야 경력	6	300억원 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6	5.7	5.4	5.1	4.8														
(다) 교육 훈련	1	1	<p>○ 기술지원기술자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만 인정)</p> <p>1) 교육훈련</p>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2주 이상</th> <th>1주 이상 2주 미만</th> </tr> <tr> <td>점수</td> <td>0.5</td> <td>0.3</td> </tr> </table> <p>2) 기술자격</p>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기술사·건축사</th> <th>기사</th> <th>산업기사</th> </tr> <tr> <td>점수</td> <td>0.5</td> <td>0.3</td> <td>0.1</td> </tr> </table> <p>※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자 중 1인에 한하여 적용</p>						구분	2주 이상	1주 이상 2주 미만	점수	0.5	0.3	구분	기술사·건축사	기사	산업기사	점수	0.5	0.3	0.1
			구분	2주 이상	1주 이상 2주 미만																	
점수	0.5	0.3																				
구분	기술사·건축사	기사	산업기사																			
점수	0.5	0.3	0.1																			
(4) 면접 (발표)	7	7	<p>○ 참여기술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자가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p> <p>※ ()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수행능력 : 3점(1) - 갖추어야 할 자질, 청렴도 등 : 2점(1) -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 점수 산정 <p>[수 : 1.0, 우 : 0.9, 미 : 0.8, 양 : 0.7, 가 : 0.6, 미참석 : 0]</p> <table border="1"> <tr> <th>구 분</th> <th>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th> <th>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자</th> </tr> <tr> <td>점 수</td> <td>5</td> <td>2</td> </tr> </table> <p>※ 면접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 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평가시 업체 및 참여기술자의 안전사고 등 부실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실시 (One-PMIS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하도급 감독소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부실기술자)은 항목별 배점에 가등급(60%) 적용(건설분야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시장방침 제459호, '10.10.30.) 이행 관련) 						구 분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점 수	5	2								
			구 분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점 수	5	2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10점)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해당 공사규모	건설사업용역 수행실적(단위 : 역원)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1) 건설 기술 용역 실적	10	<p>1)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들을 준공(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중에 해당 건설사업관리 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중(전체 건설사업관리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을 인정</p> <p>2)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경우(10점)</p> <table border="1"> <tr> <th>해당 공사규모</th> <th colspan="5">건설사업용역 수행실적(단위 : 역원)</th> </tr> <tr> <td>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td> <td>20이상</td> <td>20미만 15이상</td> <td>15미만 10이상</td> <td>10미만 5이상</td> <td>5미만</td> </tr> <tr> <td>점수</td> <td>10</td> <td>9.8</td> <td>9.6</td> <td>9.4</td> <td>9.2</td> </tr> </table>						해당 공사규모	건설사업용역 수행실적(단위 : 역원)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수	10	9.8	9.6	9.4	9.2
			해당 공사규모	건설사업용역 수행실적(단위 : 역원)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수	10	9.8	9.6	9.4	9.2																					

다. 신용도(15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용도 (15)	(1)입찰 참가 제한, 업무 정지	7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참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별점	5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별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2)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별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재정 상태 건설도	3	1) 재정상태 건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한다

점수	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3.0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7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4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1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 ()는 용역비 20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1)개발·활용 실적	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1.0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투자 실적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구분</td> <td>3%이상</td> <td>3.0%미만 2.5%이상</td> <td>2.5%미만 2.0%이상</td> <td>2.0%미만 1.5%이상</td> <td>1.5%미만 1.0%이상</td> <td>1%미만</td> </tr> <tr> <td>점수</td> <td>7</td> <td>6.8</td> <td>6.6</td> <td>6.4</td> <td>6.2</td> <td>6.0</td> </tr> </table> <p>※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p>	구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구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마. 교체빈도(5점)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바. 교체빈도(5)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자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자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자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교체빈도율(%)</td> <td>5%미만</td> <td>5%이상 10%미만</td> <td>10%이상 15%미만</td> <td>15%이상 20%미만</td> <td>20%이상</td> </tr> <tr> <td>점수</td> <td>3</td> <td>2.5</td> <td>2</td> <td>1</td> <td>0</td> </tr> </table>	교체빈도율(%)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수	3	2.5	2	1	0
	교체빈도율(%)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수	3	2.5	2	1	0										
	(2) 참여기술자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주기술자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자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바. 가점 및 감점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 공사비 절감여 기술자 (0.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부서(인허가, 승인기관은 제외) 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부서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주기술자 : 0.1점 × 가중치 기술지원기술자 : 0.1점 × 가중치 <p><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가중치</td> <td>1.0</td> <td>0.8</td> <td>0.5</td> </tr> <tr> <td>절감금액</td> <td>10억원 이상</td> <td>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td> <td>5억원 미만 1억원 이상</td> </tr> <tr> <td>절감비율</td> <td>1.0% 이상</td> <td>1.0% 미만 0.5% 이상</td> <td>0.5% 미만 0.1% 이상</td> </tr> </table> <p>*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하수도분야) * 상주기술자 및 기술지원기술자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p> <p>※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자가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자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부서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양식 11)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p> <p>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부서,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부서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p>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감점	(1)부패행위 관련자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부서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점적용 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p><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부서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p>

4.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자의 평가방법

< 해당분야 경력 >

- 해당분야 경력이라 함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하수도분야)에서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발주부서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자가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하 같다)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공사의 규모 및 공사특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시 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
-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발주부서에서 발행한 서류를 제출 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등을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등 또는 해당용역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기술자가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써 해당분야의 건설공사건설기술용역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와 직무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이외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업무 실적은 해당 분야의 60%를 적용한다.

〈 직무분야 실적 〉

- 직무분야 실적이라 함은 참여기술자의 직무분야(영 제4조 별표1 제4호 건설기술자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사업관리, 기술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참여기술자가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써 해당분야의 건설공사건설기술용역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와 직무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20점

(가) 해당분야 경력(10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평가 하는 경우 10점)

〈 배 점 〉

해당 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사업관리, 기술자문 경력 (단위 : 년)				
300억원 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수	10	9	8	7	6

(나) 직무분야 실적(9점)

〈 배 점 〉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사업관리 (6점)

등 급	점 수(단위: 년)				
고급기술자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6	5.7	5.4	5.1	4.8

-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사업관리, (3점)

등 급	점 수(단위: 년)				
고급기술자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년미만
점수	3	2.8	2.6	2.4	2.2

(다) 교육훈련(1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최근 3년간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구분	2주 이상	1주 이상 2주 미만
점수	0.5	0.3

〈 기술자격 〉

구분	기술사-건축사	기사	산업기사
점수	0.5	0.3	0.1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23점

(가) 해당 분야 경력(13점, 면접평가 하는 경우 13점)

〈 배 점 〉

해당 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사업관리, 기술자문 경력(단위: 월)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26이상	26미만 21이상	21미만 16이상	16미만 10이상	10미만
점 수	13	11.7	10.4	9.1	7.8

(나) 직무분야 실적(9점)

< 배 점 >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사업관리 (5점)

등 급	점 수 (단위:년)				
고급기술자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중급기술자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5	4.5	4.0	3.5	3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사업관리,(4점)

등 급	점 수 (단위 : 년)			
고급기술자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4	3.6	3.2	2.8
중급기술자	2이상		2미만	
	4		3.6	

(다) 교육훈련(1점)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최근 3년간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적용

< 배 점 >

구분	2주 이상	1주 이상 2주 미만
점수	1	0.5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3) 기술지원기술자 : 10점

- 기술지원기술자는 가능한 건설사업관리대상의 모든분야에 배치하되, 안전관리분야를 포함하여 5개 분야 이상이 되도록 기술지원기술자 투입계획을 수립할 것
- 기술지원기술자 투입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 전원을 평가하고, 3인이 초과시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에서 평가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 ※ 시공단계 참여기술자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것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자 평가 배점을 참여기술자의 다른 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범위에서 배분한다.

(가) 등급평가(3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 (전기분야의 기술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사 규모별 절대평가

< 배 점 >

해당 공사규모	등 급(점수)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고급기술자 이상	중급기술자
	3	2

(나) 해당 분야 경력(6점)

< 배 점 >

해당 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사업관리 경력(단위 : 년)				
300억원 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6.0	5.7	5.4	5.1	4.8

(다) 교육훈련(1점)

- 기술지원기술자가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배 점(교육훈련) 〉

구분	2주 이상	1주 이상 2주 미만
점수	0.5	0.3

〈 배 점(기술자격) 〉

구분	기술사건축사	기사	산업기사
점수	0.5	0.3	0.1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자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4) 면접·발표(7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토목분야 중 1인)의 업무 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 실시 : 면접 또는 발표시 해당 당사자 외에 컴퓨터조작 보조자 등의 참석은 불가

· 면접 또는 발표 당사자가 컴퓨터 등의 기기를 직접 조작

- 점수산정방법 : 각 항목별 점수에 다음 계수를 곱하여 합계

[수 : 1.0, 우 : 0.9, 미 : 0.8, 양 : 0.7, 가 : 0.6, 미참석 : 0점]

※ ()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업무수행능력 : 3점(1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 청렴도 등 : 2점(1점)

구분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점수	5	2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발표시 불법하도급 관리감독 소홀 기술자(부실기술자) 인지를 기술심사담당관에 조회한 후 해당될 경우 항목별 배점에 가등급(60%) 적용 [건설분야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시장방침 제459호, '10. 10. 30.) 이행 관련]

※ 면접평가는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기술자평가서 평가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건설사업관리용역 시 업체 또는 참여기술자가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평가점수에 반영하여 평가 실시

- 부실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없이 적용하고,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자에 대한 관련자료(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하여야 한다.

〈 상대평가시 업체수별 배분표 〉

·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율 :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업체수	등급					업체수	등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3	1	1	(1)			17	2	3	7	3	2
4	1	1	1	1		18	2	4	7	3	2
5	1	1	2	1		19	2	4	7	4	2
6	1	1	2	1	1	20	2	4	8	4	2
7	1	1	3	1	1	21	2	4	9	4	2
8	1	2	3	1	1	22	2	5	9	4	2
9	1	2	3	2	1	23	2	5	9	5	2
10	1	2	4	2	1	24	2	5	10	5	2
11	1	2	5	2	1	25	3	5	10	5	2
12	1	3	5	2	1	26	3	5	10	5	3
13	1	3	5	3	1	27	3	5	11	5	3
14	1	3	6	3	1	28	3	6	11	5	3
15	2	3	6	3	1	29	3	6	11	6	3
16	2	3	6	3	2	30	3	6	12	6	3

※ 참여 업체수가 30개 초과 시 등급별 배분율을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수 조정

·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 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방법 : 10점

-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준공 또는 수행중) 빗물펌프장, 하수암거 분야에 대한 용역사업을 말함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중에 해당 건설사업관리 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건설사업관리 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을 인정
- 유사용역 수행실적 이외의 하수도분야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실적은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60%를 적용한다.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등 또는 해당 발주부서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의 실적증명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수행중인 용역의 기성실적은 기술자 경력수탁관리기관 등에 신고 또는 발주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기성실적만 인정함
-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의 70% 인정)×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상 감리실적 70% 인정)×0.7 또는 1.0
-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한다.

< 배 점 >

-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경우(10점)

해당 공사규모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단위 : 억원)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점수	10	9.8	9.6	9.4	9.2

예시) 발주부서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 중 도로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 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는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 해당 도로공사 건설사업관리 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text{억원} \times 0.6) + (100\text{억원} \times 0.4) = 160\text{억원} = 10\text{점(공동도급시 해당 점수임)}$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3.1, 준공일 202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급금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다. 신용도 평가방법 : 15점

(1)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7점)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과장급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벌점 (5점)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동 법 시행령 별표9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동 법 시행령 별표9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3) 재정상태 건실도 (3점)

○ 신용평가도 등급(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가능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방법 : 10점

(1) 개발·활용실적 (3점)

-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투자 실적 (7점)

-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마. 교체빈도 평가방법 : 5점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3점)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자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 배 점 (기술지원기술자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점 수	3	2.5	2	1	0

(2) 참여 기술자 (2점)

- 참여기술자는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 상주기술자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자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자 평가방법 : 0.2점

(1)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자

-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자가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자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부서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양식 11)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부서,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5. 수행실적평가서 작성방법

가. 제출서류 명세

- (1) 용역참여 신청서 1부
- (2) 용역관련 해당등록증 사본 각1부
 -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록증
 - (나) 건설사업관리업 등록증(전력)
 - (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엔지니어링활동주체 회원수첩
-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공동도급시 : 공동수급 협정서 1부 첨부)

나. 서류작성 방법

- (1) 페이지수 : 제한없음
- (2) 인쇄 및 제본
 - (가) 용지크기 : A4 (210mm / 297mm)
 - (나) 재 질 : 백상지 (80g/m²)
 - (다)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
 - (라)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I 은 순서에 의거 작성하되 항목별 시작쪽에 색간지를 삽입한다.
 - (바) 제본순서
 -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수행실적평가서 (I)(표지서식 1)
 - 2) 용역참여 신청서(양식 1)
 - 3) 목 차

- 4)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
- 5) 공동수급협정서
- 6)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양식 2)
- 7) 참여기술자 과업수행 조직표(상주 및 기술지원 포함)(양식 3)
- 8)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기술자 동의서
- 9) 참여기술자 자격사항(양식4)
- 10) 기술자 보유현황 확인서
- 11) 상주 책임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경력확인서
- 12) 상주 분야별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경력확인서
- 13) 기술지원기술자 경력확인서
- 14) 참여기술자 경력·실적사항(양식 5)
- 15)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양식 6)
- 16)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 17) 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기술자 자격·업무정지 등(양식 7)
- 18) 제재현황 및 벌점 확인서
- 19) 재무제표 확인 또는 재정상태 검토보고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확인)
- 20)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21) 투자실적관련 사실증명원(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22) 신기술지정증서 및 특허 등록증 사본
- 23)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한국건설신기술협회)
- 24)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25) 참여기술자 교육실적
- 28) 참여기술자 업무중첩도(양식 8)
- 29)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 교체빈도(양식 9)
- 30) 벌점 관련 사항(양식 10)
- 31) 자기평가서(양식 11)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 가)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

수급제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증빙서류가 2종이상 미비할 경우등)는 실격 처리한다.

다)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감리원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감리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표지서식 1]

접수번호	
------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수행실적 평가서(1)

용역명: 대치1빗물펌프장 신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 A X 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양식 1]

용역참여신청서

수 신 : 강남구청장

참 조 : 치수과

제 목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아래 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용역명 : 대치1빗물펌프장 신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붙임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수행능력 평가서 1부. 끝.

2015. . . .

회사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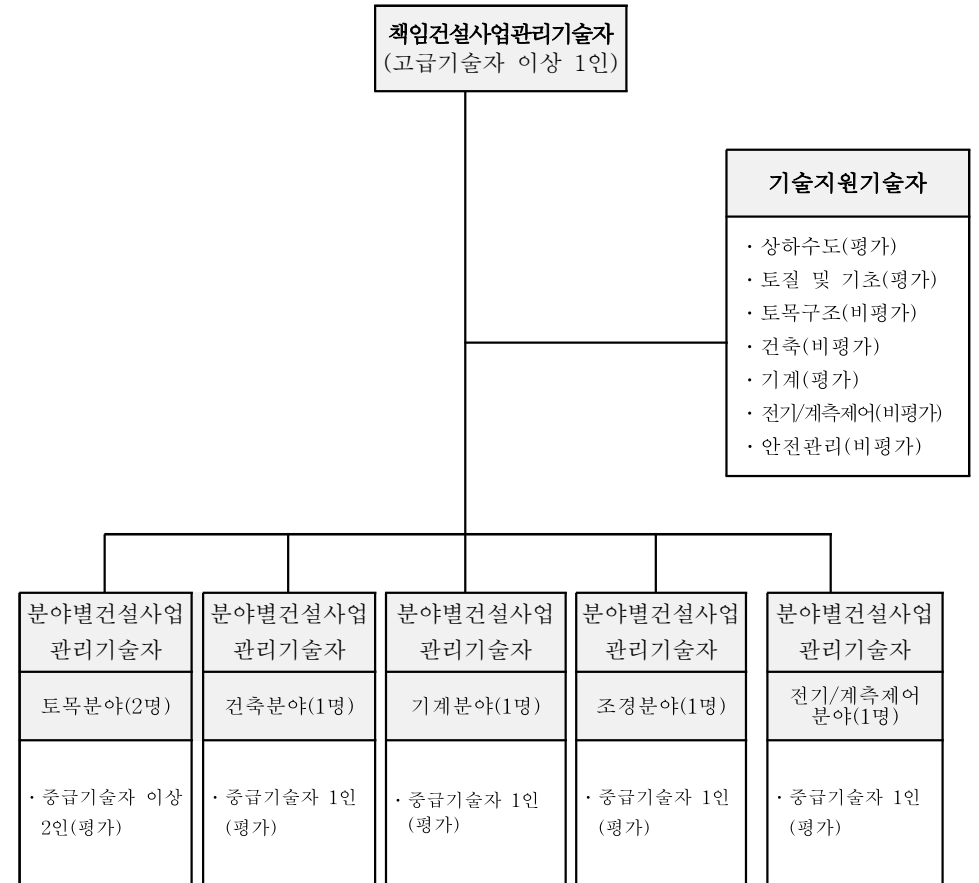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분담내용		비고
					업종	비율	
계					100%		



참여기술자 자격 사항

구 분	분야	등급	주민등록 번호	자격내용		학력내용		교육 수로 일자	소속 회사
				자격명	취득일	최종 학력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책임건설사업 관리자 ○○○	토목								
분야별 건설 사업 관리자	○○○	토목							
	○○○	토목							
	○○○	토목							
	○○○	토목							
기술지원 기술자	○○○	상하 수도							
	○○○	토목 시공							
	○○○	토질 및기초							
	○○○	토목 구조							
	○○○	안전 관리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건설사업관리 경력 확인서 1부.

참여기술자 경력·실적사항

해당분야 경력현황(설계,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구 분	성명	분야	현재까지 경 력	평점	해당분야 용역참여실적			
					용역명	발주부서	참여기간	
참여 기술자		해당 분야	년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소계		개월				
		분야 외	년 월					~ (월)
								~ (월)
								~ (월)
						~ (월)		
소계		개월						
합계								

직무분야 실적현황

구 분	성명	분야	현재까지 경 력	평점	직무분야 용역참여실적			
					용역명	발주부서	참여기간	
참여 기술자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감독 감리	년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계		개월				
		시공 시험 검사 감독 감리	년 월					~ (월)
								~ (월)
								~ (월)
						~ (월)		
계		개월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구분	발주처	사업명	용역기간	용역비 (천 원)	가건비율	적용금액 (천원)	용역개요	분야	
완 료	전체 단계 건설 사업 관리								
		소 계							
	설계 단계								
		소 계							
	시공 단계								
		소 계							
	건축· 주택 갑리								
		소 계							
설계 용역									
	소 계								
	계								
진 행	전체 단계 건설 사업 관리								
		소 계							
	설계 단계								
		소 계							
	시공 단계								
		소 계							
	건축· 주택								
		소 계							
설계 용역									
	소 계								
	계								
합계									

2.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등록 또는 발주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진행 중 인 용역사업은 위 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기성실적만 인정
3.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공동도급으로 수행 시는 참여 비율에 의한 자사실 적만 인정

- 첨부 : 1.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2. 기성실적확인서

※ 1. 유사용역 사업은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등록 또는 발주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실적 중 최근 3년 이내(공고일 현재 기준)에 수행한 유사용역 실적 (종합, 건축, 토목, 설비, 전기 분야로 구분)

[양식 7]

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기술자 자격·업무정지등

업체명 및 기술자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초치기관명	사 유 요 약	점 수
	~				
	~				
	~				
	~				
계					

※ 각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첨부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양식 8]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

구 분 (성 명)	현장 배치현황		점 수	비 고
	현 장 명	배 치 기 간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 ○○○			중복배치시 : 0점	
분야별 건설 사업 관리 기술자	○○○		중복배치시 : 0점	
	○○○		중복배치시 : 0점	
	○○○		중복배치시 : 0점	
	○○○		중복배치시 : 0점	
	계		총점/평가분야별기술자수=	
기술지원 기술자	○○○		5개이상 : 0점	
	○○○		5개이상 : 0점	
	○○○		5개이상 : 0점	
	계		총점/평가기술지원기술자수 =	
총 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교체빈도

현장명	현장배치 기술자수	교체건수		교체빈도(%)	비고
		상주기술자	비상주기술자		

참여기술자의 교체빈도

구 분 (성 명)	최근1년간 건설사업관리 현장에서 교체한 현장명	점 수	비 고
참 여 기술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0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0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0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0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0점=	
기술지원 기술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0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0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0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0점=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0점=	
계			

벌점 관련 사항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받은 벌점에 따라 평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측정기관	벌점	벌점점수	비고
계				

자 기 평 가 서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내용	실적	배점	자기평점	비고		
가. 참여기술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20)	토 목 (성 명)	등 급		-	적격, 부적격		
			해당분야경	해당분야	년	10		
				분야외	년			
		계		년				
		직무분야적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년	6			
			시공, 건설사업관리	년	3			
		교육훈련	교육훈련		0.5			
			기술자격		0.5			
		평점 소계				20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23)	토 목 성명(A)	해당분야경	해당분야	월	13	
	분야외				월			
	계				월			
	직무분야적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년	5		
			시공, 건설사업관리	년	4			
	교육훈련			1				
	평점 소계				23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내용	실적	배점	자기평점	비고		
가. 참여기술자 (10)	기술지원기술자	토 목 (상하수도) (성 명)	등 급		3			
			해당분야경	해당분야	년	6		
				분야 외	년			
		계		년				
		토 목 (토목시공) (성 명)	등 급		3			
			해당분야경	해당분야	년	6		
	분야 외			년				
	계	년						
	토 목 (토질및기초) (성 명)	등 급		3				
		해당분야경	해당분야	년	6			
			분야 외	년				
			계	년				
교육훈련		교육훈련		0.5				
교육훈련		기술자격		0.5				
평점 소계				10				
면접 발표 (7)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5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			2				
나. 유사업역수행 실적	최근3년간 실적	건설사업관리용역	억원	10				
다.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업 무 정 지	지정기간	월	7				
	벌점	부과기간		5				
	재정상태 건설도	신용평가등급		3				
	평점 소계				15			

평가 항목	평가요소	평가내용	실적	배점	자가평점	비고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건 금액	3		
	투자실적	최근3년간 투자실적 비율	%	7		
	평점 소계			10		
마. 교체빈도	교체빈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3		
		참여기술자		2		
	평점 소계			5		
가점 및 감점	가점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자		0.2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10		
	평점 소계			±5		
총 평 점				100	점	

6. 사업수행 참여 신청서 제출

- 가. 제출기간 : 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입찰공고시 별도안내
- 나.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치수과
- 다.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 1부)
- 라. 제출방법 : 문서로 제출 (담당자가 직접 인편으로 접수해야 함)
- 마. 제출시 지참 서류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공문 1부.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실적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